

#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4. 2. 2. 김미영 의원 등 7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2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4. 2. 1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미영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‘예술인 기회소득’ 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일정소득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 2023.8.4. 제정·시행한 「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」가 2023.12.31.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,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- 검토결과,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넘어 지역 예술인들의 성장과 시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4. 2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2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4. 2. 1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문화예술과장 최원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 감면 사업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등 조문 개정(안 제15조 제2항 및 제10항).
  - 그린카드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스포츠 강좌 이용료 납부 시 이용료의 10%~20% 감면(카드 소지자에 한함, 중복할인 불가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개정조례안은,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등 일상 속에 친환경 소비생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카드사가 협약하여 추진 중인 그린카드 감면 사업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 시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,
  -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, 사용료 등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

-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을 적용에 관한 사항이 「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와 [별표2]에 각각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,
- 시민들이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4. 2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2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4. 2. 1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 제1호 개정에 따라 「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 제2조 제1호 “청년”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청년”에 대한 정의를 개정(안 제2조제1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에서 ‘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‘청년’의 정의를 「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일관성 있는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해 「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4. 2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2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4. 2. 1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개정에 따라 「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 제2조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외국인 청소년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여성청소년”에 관한 정의 개정(안 제2조 제1호~제3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2023.10.11. 「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 본 사업이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확대 지원예정인 외국인 여성청소년 등이 쉽게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/오프라인에서의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